



해양수산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협조요청

1. 우리 부에서는 인적과실로 인한 선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1.30.부터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바다내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용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관련하여, 단말기 보급을 통한 서비스 이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송부드리오니, 귀 기관 및 소속 회원사 사무실 등에 게시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안내·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3. 아울러, 선박소유자 등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1.1.30. 이후에 건조/수입되는 3톤 이상의 선박은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른 단말기 의무설치 선박으로서, 미설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안내하고, 비어선에 대한 보조금(설치비용의 약 50%)이 올해까지만 지원됨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바다내비 홍보포스터 1부(각 지부, 회원사별 별도 송부). 끝.



해양수산부장관



수신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선급,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장

주무관 김광태 해양수산사무관 서승준 팀장 전결 2022. 10. 26.
권순태

협조자

시행 첨단해양교통관리팀-4223 (2022. 10. 26.) 접수

우 3013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어진동 뱅크빌딩 7층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http://www.mof.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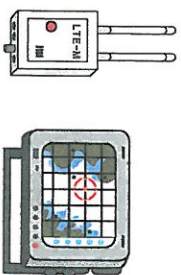
전화번호 044-200-6143 팩스번호 044-866-4394 / maritime153@korea.kr / 대국민 공개

바다 내비

주요 서비스 (해상 100km까지)

- 실시간 전지해도
- 중돌 좌초 위험경보
- 해안안전정보
- 해상 내비게이션 (2023년 부터)
- SOS 긴급구조요청
- 문자음성·영상 기능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2022년 까지만 비이전 대상
180만원 지원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3톤 이상 선박은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단말기 설치문의 ☎ 070-4242-1156 (제조사)
보급사업 문의 ☎ 044-330-237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홍보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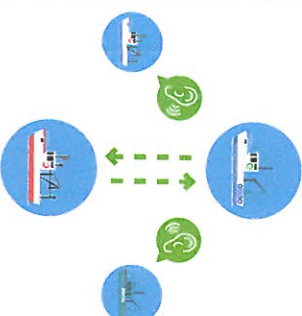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사용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하세요~

Before

! 단말기 없이 운항
실시간 해양안전정보 미 활용



! 단말기 통화, 채널 동일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VH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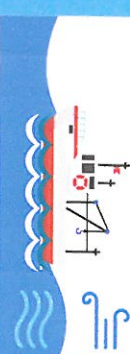


! 예인선이 타 선박(부선 등)
예인할 때 타 선박이 예인세 결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별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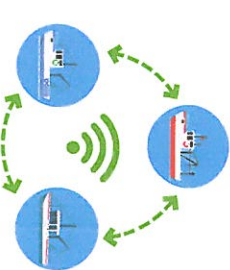


After

✓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전지해도 자동
송신 및 수신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항해 뿐만 아니라 연동 시 감동 기능



✓ 단말기 설치 선박 간 LTE 급속도로
성립한 통신망 활용·통화·영상 기능,
그를 대외가 가능한 UC 기능 구현



✓ 예인선이 타 선박(부선 등) 예인할 때
타 선박이 예인세 결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별 가능

